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29
----------	-------

발의연월일 : 2026. 3. 30.

발 의 자 : 김장겸 · 조지연 · 주호영
강대식 · 이인선 · 안철수
강명구 · 박덕흠 · 서천호
구자근 · 김재섭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소속 공무원 또는 민·관합동조사단으로 하여금 사업장 출입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발생의 빈도가 늘고, 해킹 수단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침해사고의 기술적 특수성에 대응할 전문기관 인력의 체계적 활용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침해사고조사관을 지정하고, 침해사고조사원을 위촉하여 침해사고조사관을 지원하도록 하며,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자료제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 대응 체계를 갖추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및 제48조의8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4제6항 본문 중 “요구할”을 “명할”로, “소속 공무원”을 “제48조의7에 따른 침해사고조사관”으로 한다.

제48조의7 및 제48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7(침해사고조사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조사·분석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침해사고조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관(이하 “침해사고조사관”이라 한다)의 침해사고의 조사·분석 등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침해사고조사원(이하 “침해사고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침해사고조사관 및 침해사고조사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침해사고조사관의 자격·임명·직무배치 및 침해사고조사원의

자격·위촉·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8(이행강제금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자료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만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루당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5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우정청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사고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 ⑤ (생략)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u>요구할</u> 수 있으며,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u>소속 공무원</u>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에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 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 ⑧ (생략)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명할----- -----제48 조의7에 따른 침해사고조사관- ----- ----- ----- ----- ----- ----- ----- ----- -----.
<신설>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48조의7(침해사고조사관 등) ①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u> <u>해사고의 조사·분석 등에 관</u> <u>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u>

<신 설>

속 공무원 중에서 침해사고조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관(이하 “침해사고조사관”이라 한다)의 침해사고의 조사·분석 등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침해사고조사원(이하 “침해사고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침해사고조사관 및 침해사고조사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침해사고조사관의 자격·임명·직무배치 및 침해사고조사원의 자격·위촉·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8(이행강제금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8조의

4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자료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만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루당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u>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u>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u>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u> ⑤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채납 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u>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 ----- ----- -----<u>소속 기관의 장, 지방우정청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u>----- -----. ② ~ ④ (현행과 같음)
---	---